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87호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의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서명일 · 구점득 · 김경수 · 김남수 · 박강우
성보빈 · 이우완 · 이종화 · 이천수 · 전홍표
진형익 의원(11명)

찬 성 의 원 : 김영록 · 김현일 · 박선애 의원 (3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의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 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창원시·창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창원시 공무원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창원시·창원시의회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

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소속:	직급:	
	연락처	행정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고 관련 사항	사고일시:
	사고 발생상황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그 밖의 사항: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제출서류	사고차량 사진 1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13829호

(도로교통법), 2016.12.2] [[시행일 2017.12.3]]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